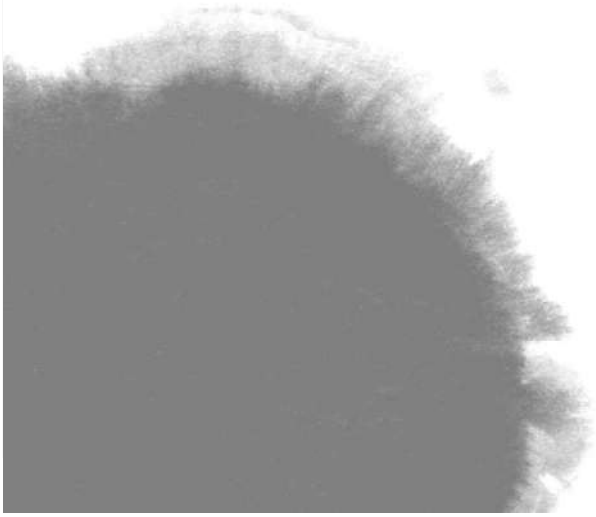
04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동향



제4장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동향

제1절 국내 아동영향평가 현황 및 실태

1. 국내 각 종 영향평가 제도 흐름

○ 국내의 영향평가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부(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국무총리실(규제영향분석),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 교육부(교육환경영향평가),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기술영향평가), 행정자치부(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에서 분산 수행 됨.

- 국내 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적 개선(물리적 환경, 교통, 교육환경, 기술 등)과 정책 또는 제도 개선(규제, 성별, 부패, 고용, 건강, 개인정보 등)으로 구분됨.

〈표 4-1〉 국내외 영향평가제도 비교

구분	국내			국외	
	건강	성별	환경	사회	평등
주관부처	환경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미 상무성, 해양대기관리청, 수산업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근거법령	환경보건법	여성발전기본법	환경보건법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원칙과 지침 (Guidelines	인종관계법, 장애차별금지법, 평등법

구분	국내			국외	
	건강	성별	환경	사회	평등
				and Principles for SIA)	
시행년도	2010년	2005년	1981년	1990년대/미국	2011년/영국
실시목적	-모든 계획, 사업 등이 인간에게 미치는 건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이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프로그램 등이 건강 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치를 제안	-다양한 정책의 성 차별적 영향에 대한 원인을 발견해 내고 그 개선대안을 모색	-개발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개발사업이나 정책변동으로 인한 사회영향들(사람들의 생활양식, 노동, 여가, 조직, 관계의 변화)등을 예측· 분석하고 대책 강구	-정책이나 서비스, 프로젝트나 계획 등이 평등과 관련하여 인종, 성별, 장애, 성적 경향, 연령, 종교가 다른 '평등 목표집단'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
평가대상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의 건설사업	-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주요 사업중심으로 각 행정기관이 대상정책을 자율적으로 선정	-도시개발, 산업입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철도, 공항 건설, 수자원, 하천개발, 개간, 매립, 관광단지, 산지,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폐기물·분뇨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토석 등 채취, 친수구역 조성 등	-댐, 발전소 , 송유관, 가스관,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건설 사업과 쓰레기 매립지 및 위해 폐기물 처리장 등의 시설 조성·건설 사업 등	-모든 신규·개정·정책사업, 현재의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 적용
평가내용	-주변지역의 인구, 사망률, 유병률, 인구집단분석(인구추이, 연령별, 성별 인구),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의 분포 현황 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건강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	-법령의 성별 구분, 고정관념, 특성, 성별 균형 참여에 따른 필요성 및 개선안 -사업 및 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따른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전략, 중점과제에 따른 성별 요구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등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을 중심으로 제안된 조치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개선안 마련	-인구, 생활스타일, 문화적 전통, 지역공동체성, 삶의 질과 복지, 빈곤 개선, 성평등, 평등, 권리와 정의, 건강 등의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국가 및 지역수준의 개발사업 등	-고용, 임금, 직업에의 접근 기회,교육 및 훈련,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등 노동부문과 교육부문에서의 접근성(차별)과 인권 및 자유의 보장에 미치는 영향 등

구분	국내			국외	
	건강	성별	환경	사회	평등
평가방법	-사업 수행 전에 사업수행자가 실시하며, 이 결과를 환경부장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유역청 또는 지방청 환경평가과)이 검토	-공무원이 평가 주체가 되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분석 평가 -전문가가 평가 주체가 되어 분석 평가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 후,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서)의 평가서 협의·검토 후 사업승인기관에 통보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이해관계자 간 정보교환 틀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평가와 검토	-평등성 선별단계를 통해 특정 정책사업이 관련 집단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영향을 분석 후 구체적 개선방안과 대안 제시
평가시기	-사업 실시 전, 계획단계				

자료: 서영미 (2017). 영유아권리에 기초한 아동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적용.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40-42.

2. 국내 아동영향평가 제도

○ 일반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기 위해서는 아동영향평가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아동친화도시 추진도시들은 대부분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조례 안에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지자체들이 대부분이며, 6개 지자체만이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단독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절차적 기준과 강제성 확보 필요

- 아동친화도시와 연계한 아동영향평가 실시한 최초 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 중 아동영향평가는 법과 정책, 관련 업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행 전과 실행과정, 실행 후에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하는 것임(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7; 서영미, 2017).

- 이렇듯 아동친화도시의 원칙은 아동의 참여 보장,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전반의 전략, 아동권리 담당 부서 또는 조정 체계,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적정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성인·지역사회의 아동권리 인식 확산과 홍보, 아동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독립적 옹호활동 지지·지원,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로 10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은 지방정부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9가지 원칙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표 4-2〉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

원칙	내용
아동의 참여 보장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제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입법, 법적 틀, 절차 등 마련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전반의 전략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개발
아동권리 담당 부서 또는 조정 체계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도시의 조직구조를 개발
아동영향평가	-법,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행 전후와 집행 단계에서 조사하고 평가
아동관련 적정예산 확보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고 분석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충분한 모니터링 실시
아동, 성인, 지역사회의 아동권리 인식 확산과 홍보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시민과 아동의 인식제고
아동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독립적 옹호활동 지지 · 지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옴부즈퍼슨 위촉이나 위원회 등 독립적인 기구의 개발을 추진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17). 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cfc/goal) 인출 및 재구성

〈표 4-3〉 아동영향평가 조례 예시(1)

제○○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군수)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표 4-4〉 아동영향평가 조례 예시(2)

제○○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아동관련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4-5〉 유니세프의 아동영향평가 개요

범 주	내 용
평가 목적(왜)	아동의 삶과 권리를 증진시키는 시스템 평가
평가 대상(무엇을)	지자체의 행정체계와 시행사업
평가 시기(언제)	사전, 사후 평가
평가 방법(어떻게)	정량평가, 정성평가, 혼합
평가 내용(기준)	5대 목표 20개 세부목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영향지표
평가 주체(누가)	총괄부서(평가부서) 및 사업부서(담당부서)의 공무원, 아동

〈표 4-6〉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영향평가 내용

내용	평정	비고
해당지역 아동과 관련된 조례와 정책, 혹은 업무에 대해 새로운 제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성,	예 □ / 아니오 □	'예'라고 대답했으면 지자체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과정의 개요를 기술해 주시고, 이를 명시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	평정	비고
인종, 장애 등 소회집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잠재적 차별요소 확인이 이루어짐)		
아동영향평가가 지자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에 실행됩니까?	예 □ / 아니오 □	'예'라고 대답했으면 지자체가 정책결정 전에 시행한 사전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개요를 기술해 주시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자체 당국이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합니까?	예 □ / 아니오 □	'예'라고 대답했으면, 지자체의 정기적인 아동영향평가 방법에 대해 기술해 주시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런 평가 과정이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상황을 고려합니까?	예 □ / 아니오 □	'예'라고 대답했으면 제시된 평가과정 자료 안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내용에 관한 개요를 기술해주시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 아동이 참여합니까?	예 □ / 아니오 □	'예'라고 대답했으면 제시된 아동이 참여하는 평가과정 개요를 기술해주시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와 해당자료 안에서 아동의 의견을 특별히 고려해 반영한 부분을 명시해 주십시오

자료: [UNICEF (2020).]알기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한국 유니세프위원회.

〈표 4-7〉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추진 현황

(2020년 11월, 기준)

지역구분	인증도시	인증을 추천 중인 도시
강원도	횡성군(2020)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기도	광명시(2018), 부천시(2019), 수원시(2017), 시흥시(2019), 오산시(2017), 용인시(2020.1) 화성시(2018)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경상남도	-	김해시, 창원시
경상북도	구미시(2019), 영주시(2017)	경주시, 칠곡군, 포항시, 김천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2019.12), 동구(2019), 서구(2017)	북구

대구광역시	-	달서구, 중구,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2017)	대덕구, 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2016), 부산광역시(2019)	사하구, 서구, 진구, 북구
서울특별시	강동구(2017), 강북구(2018), 강서구(2017), 광진구(2018), 구로구(2019), 금천구(2019), 노원구(2018), 도봉구(2016), 서대문구(2018), 성동구(2018), 성북구(2013), 송파구(2016), 양천구(2019), 종로구(2017) 관악구(2020)	강남구, 동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서초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2017)	-
울산광역시	-	북구,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동구(2018), 서구(2017)	남동구,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광양시(2018), 순천시(2018), 장흥군(2020)	나주시, 화순군
전라북도	군산시(2016), 완주군(2016), 전주시(2017)	익산시
충청남도	논산시(2019), 당진시(2018), 아산시(2017)	금산군, 보령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충청북도	음성군(2018), 충주시(2017), 옥천군(2020), 제천시(2020)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합계 (단위: 도시)	47	53

자료: 유니세프 (202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http://childfriendlycities.kr/ 에서 2020년 11월 10일 발췌.

〈표 4-8〉 국내 아동영향평가 조례 분석

순	지역	인증도시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아동영향평가 내용 포함	별도의 아동영향평가 조례 구성
1	강원도	횡성군 (2020)	제6장 아동영향평가 -제28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2	경기도	광명시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제12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3		부천시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제14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4		수원시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등 -제5조의2(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제5조의3(아동영향평가의 실시)	
5		시흥시	제5장 아동영향평가 -제32조 (아동영향평가 계획수립 등) -제33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조정) -제34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6		오산시	제8조의 4 아동영향평가	
7		용인시	없음	
8		화성시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 -제14조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 등)	
9	경상북도	구미시	제5장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33조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 수립 등) -제34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10		영주시	제5장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25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1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10조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12		동구	제2장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 -제7조 영향평가	
13		서구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및 정책 -제7조 아동영향평가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및 정책 등 -제8조 영향평가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 -제8조 영향평가	
16		부산광역시	제14조 아동정책영향평가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순	지역	인증도시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아동영향평가 내용 포함	별도의 아동영향평가 조례 구성
				구청자의 책무 제4조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수립 등 제5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6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7조 시행규칙
18		강북구	없음	
19		강서구	제4장 아동영향평가 -제28조 (아동영향가 등의 실시계획) -제29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조정 -제30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제31조 (아동권리 지킴이)	
20		관악구	제4장 아동영향평가 -제21조 (아동영향가 등의 실시계획) -제22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조정 -제23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21		광진구	제5장 아동영향평가 -제32조 (아동영향평가 계획수립 등) -제33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조정) -제34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제35조 (아동권리 지킴이)	
22		구로구	제5장 아동영향평가 -제28조 (아동영향가 등의 실시계획) -제29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조정 -제30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제31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32조 시행규칙	
23		금천구	없음	
24		노원구	제8조 아동영향평가	
25		도봉구	없음	
26		서대문구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 -제11조 아동권리모니터링 실시 -제12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27		성동구	제8조의 6 아동영향평가	
28		성북구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구청자의 책무 제4조 아동영향평가 등

순	지역	인증도시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아동영향평가 내용 포함	별도의 아동영향평가 조례 구성
				계획수립 등 제5조 아동영향 평가 위원회 제6조 회의 등 제7조 수당 등 제8조 아동영향평가실시 제9조 평가권고 제10조 위원회 권고의 이행 제11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12조 규정 등의 제정
29		송파구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구청자의 책무 제4조 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제5조 평가대상 및 범위 제6조 시행규칙
30		양천구	제12조 아동영향평가	
31		종로구	제5장 아동영향평가 -제28조 (아동영향가 등의 실시계획) -제29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조정) -제30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제31조 시행규칙	
32	세종 특별시	세종특별 자치시	제4장 아동·청소년영향평가 -제26조 (아동·청소년영향가 등의 실시계획) -제27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조정) -제28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제29조 (아동·청소년권리지킴이)	
33	인천 광역시	동구	제5장 아동영향평가 등 -제22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23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34		서구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제13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35	전라 남도	광양시	제5장 아동영향평가 -제27조 (아동·청소년영향가 등의 실시계획)	

순	지역	인증도시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아동영향평가 내용 포함	별도의 아동영향평가 조례 구성
		-제28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36		순천시	제14조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등	
37	전라북도	군산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2장 영향평가의 실시 제4조 영향 평가의 대상 제5조 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제6조 영향평가 양식의 작성 제3장 영향평가의 지원체계 제7조 아동영향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8조 평가 권고 제9조 위원회 권고의 이행 제10조 회의 등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영향평가 교육 제13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14조 규정 등의 제정
38		완주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아동영향평가실시 등 계획의 수립 제5조 아동영향평가 심의·조정 제6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7조 평가 권고 제8조 위원회 권고의 이행 제9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10조 시행규칙

순	지역	인증도시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아동영향평가 내용 포함	별도의 아동영향평가 조례 구성
39		전주시	제4장 아동영향평가 -제22조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 -제23조 (아동영향평가단) -제24조 (평가결과 제출) -제25조 (수당 등)	
40		논산시	없음	
41		당진시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 -제9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42	충청남도	계룡시 (추진 도시)	제2장 기본계획 -제7조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아동영향평가등 계획 수립 등 제5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6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7조 시행규칙
43		아산시	없음	
44	충청북도	음성군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및 정책 등 - 제7조 (아동영향평가)	
45		옥천구	제6장 아동영향평가 -제26조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제27조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제28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29조 평가 권고 -제30조 위원회 권고의 이행	
46		제천시	제2조 정의 4. “아동영향평가“란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7		충주시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 제8조 영향평가	
계			36 (중복 1개 / 조례 미제정 6개)	6

자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2020).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www.elis.go.kr 에서 2020년 10월 31일 인출. 재구성.

〈표 4-9〉 국내 아동영향평가 조례제정 실태 및 주요 내용

구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완주군	충청남도 계룡시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 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계룡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평가주체	평가부서 담당부서	평가부서 담당부서	소관부서 담당부서	군수	시장
평가지표	사전평가 7항목 사후평가 8항목	사전평가 8항목 사후평가 8항목	평가항목 및 양식작성 등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기초평가서, 점검표)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통해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통해
평가방법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시기	사전아동영향평가 사후아동영향평가	사전아동영향평가 사후아동영향평가	사전, 과정 중 아동영향평가	사전, 과정 중 아동영향평가	사전아동영향평가
시행일자	`16.05.04.	`18.04.05.	`20.08.04.	`18.03.15.	`17.12.29.

자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2020).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www.elis.go.kr 에서 2020년 10월 31일 인출. 재구성.

제2절 국외 아동영향평가 흐름

○ 국외 아동영향평가는 EU국가가 선도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각국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각 나라의 법령을 통한 아동 관련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단,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자체적으로 아동에 관련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미국

○ 미국의 아동권리는 미국의 청소년 권리 및 미국의 국제 아동 납치 및 미국의 아동 노동법 등 다양함. 미국은 UN 아동권리협약 CRC(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은 유일한 국가임. 그 결과

미국에서는 아동 권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일반적으로 미국 아동의 권리는 적절하게 보호되지만 건강 관리, 아동학대, 청소년 법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상당한 문제가 존재함(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20)[5].

○ 미국은 보건복지부 아동청의 CB(Children 's Bureau)[6]는 아동학대 및 방치 감소, 입양 수 증가; 위탁 양육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및 가족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면제 CWDA (Child Welfare Waiver Demonstration Authority)는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조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주정부에 연방 기금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2016년 아동복지 결과 : 의회 보고서(게시일자: 2019년 9월 9일)'는 가장 최근에 게시된 자료로서 7대 아동복지 결과 창출에 대한 아동복지의 중점사항을 학대, 입양, 양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 매뉴얼임

〈표 4-10〉 미국의 아동 복지 정책 매뉴얼

	아동 복지 정책 매뉴얼(Child Welfare Outcomes 2016: Report to Congress 7)
1	아동학대의 재발 감소 및 방치
2	아동학대의 발생률 감소 및 위탁 양육 방치
3	위탁 양육 아동을 위한 영구성
4	위탁 양육 시간 단축 및 재진입 감축
5	입양까지 위탁 양육 시간 단축
6	아동의 입양 배치 후, 안정성 향상
7	아동의 배치를 그룹홈 또는 기관을 통해 실시, 관리

자료: 미국의 아동 복지 정책 매뉴얼 'Child Welfare Outcomes 2016: Report to Congress (https://www.acf.hhs.gov/)

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CDF[7]는 모든 어린이에게 건강한 시작, 공정한 시작, 안전한 시작, 삶의 도덕적 시작, 성공적인 시작 돌보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5)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20). https://www.acf.hhs.gov/에서 2020년 11월 23일 발췌
6) Children 's Bureau (2020). https://www.acf.hhs.gov/cb에서 2020년 11월 23일 발췌
7) 미국 아동 방어 기금(CDF : Children 's Defense Fund) (출처 :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2020)

성인이 되도록 하는 정부 민간 비영리 단체로서 미국 어린이의 지위와 권리를 11개 분야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표 4-11> 미국 아동 방어 기금(CDF) 분야

미국 아동 방어 기금(CDF : Children 's Defense Fund) 11개 분야			
1	아동 인구	6	아동 건강
2	아동 빈곤	7	유아
3	소득 및 부의 불평등	8	교육
4	주택 및 노숙자	9	아동복지
5	아동 기아 및 영양	10	청소년 정의 및 총기 폭력
		11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 지위

미국 아동의 기본 권리는 일반적으로 미국 헌법 수정 제 14 조에 명시된 대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이고,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적용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는 제외하고 있으며, American Academy of Adoption Attorneys는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안정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함[8)]

<표 4-12> 미국의 아동 관련 직면 문제

미국「헌법 수정 제 14 조」미국의 아동 관련 직면 문제		
1	빈곤	2010년 말, 미 농무부는 미국 아동 중 4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이런 아동은 건강 악화 및 고등 교육에 어려움 있음
2	아동 학대	매년 3백만 건 이상의 아동 학대 사례가 있으며 이중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은 약 10%로 아동 학대가 문제임
3	건강에 대한 권리	8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건강 보험이 없으며, 특히 소수 인종(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는 위험 수치가 더욱 높음
4	이주 노동	아동 노동법이 잘 시행되고 있지만 수천 명의 아동, 특히 히스패닉계가 험난한 농업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
5	영양 섭취	전체 아동 중 거의 1/3의 아동이 비만 또는 과체중이며 이중 45%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미국 형법 및 형법에는 아동권리협약(CRC)에 위배되는 조항 다수가

8) Library of congress (2020) https://guides.loc.gov/14th-amendment/introduction에서 2020년 11월 23일 발췌

있음.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4-13〉 미국의 UN 아동권리협약 CRC 위배 조항

UN 아동권리협약 CRC(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위배 조항	
범죄 당시 미성년자였던 수감자들은 일부 주에서 여전히 합법적인 사형을 선고	사형이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적합한 형이 아니라는 CRC 제 37조를 준수하지 않음
젊은 수감자들은 가석방 가능성 없이 구금 CRC 제 37조를 위해함	CRC 제 37조를 위배함
미국은 무력 충돌 시, 아동의 참여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의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고 무력 충돌에서 미성년자를 군인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적극적인 NGO는 미군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집 전술과 계급 내에 17세 군인 다수	미성년자 군인 다수

2) 일본

○ 일본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결과'(1998년 6월)를 통한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일본은 UN 아동 권고사항, 권고 법규, 제22항, 제43항 모두 조약 제3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제6조 (생존권, 성장 발달의 권리), 제12조 (의견표명권), 제29조 (교육 목적), 제31조 (휴식, 여가, 놀이의 권리)를 위배했으며 그에 대한 근거는 일본은 매우 높은 문맹률 대비 교육에 중요성 부여 지적, 아동이 고도로 경쟁적인 교육 제도의 스트레스에 노출, 여가와 운동 및 휴식의 시간이 결여 되어 발달 장애에 노출가 능으로 위 조항을 근거 등교거부 사례가 상당수에 있는 것을 우려함(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 · 5회 일본 정부 보고서, 平成2 9年6月)

○ 이에 따라 일본정부에 UN 아동권리 위원회는 고도로 경쟁적인 교육 제도 및 그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3조 , 제6조 , 제12조 , 제29조 및 제31조에 비추어

과도한 스트레스 및 등교 거부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음

3) 독일

○ 독일은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에서 행정적으로 주정부, 지자체간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년사무소'를 중심으로 행정과 민간공공분야의 정책 전달의 시행체계로 구성하고 있으며, 공공의 관계망을 통한 적극적인 아동보호 추진과 조기(개입)지원등 적극적인 아동보호 추진과 보호 추진등을 핵심적인 방향을 지표로 설정하고 있음(박영균, 장승원, 조홍식, 2014, 민부기 외, 2016; 서영미, 2017).

○ 독일의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연계체계는 연방정부 아동 청소년보호협회의 정치적인 역할과 목표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16개의 주정부 아동 청소년보호협회의 주정부와 지자체 역할과 협력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420개의 기초단계 아동 청소년보호협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해당 지역의 아동 청소년의 가족지원을 통해 아동, 보호 실천을 행하고 있음(박영균, 장승원, 조홍식, 2014; 서영미, 2017).

3. 영국

○ 영국은 연방정부로서 웨일즈 주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영향평가는 아동권리의 의사를 반영하는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사전평가로 제한한 기존 정책 및 법률 제정, 아동 영향과 관련된 행정 서비스, 아동권리 반영, 2012년 복지법안(welfare bill) 평가, Devon 카운티에서 수행 평가(보호가정의 폐쇄가 가져올 영향 평가) 실시 및 입양 보호양육을 받게되는 구체적 평가 실시등 각 지방 행정기구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의무임(Devon Children's rights in Wales, 2016 ; 박영균, 장승원, 조홍식, 2014 ; 민부기 외, 2016 ; 서영미 2017).

○ 그 외 2020년 까지 국가별 최근 연구 동향을 <표4-13>과 같이 조사하였으며 특히, 각국은 다양한 아동영향평가 제도를 목적과 방향, 수단 및 방법, 효과성, 기여 및 한계성을 통해 분석함

〈표 4-14〉 국가별 아동영향평가 제도 비교

국가별	아동영향평가 제도			
	목적 및 방향	수단 및 방법	효과성	기여 및 한계성
한국	-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인식 확산 및 정부 및 지자체, 기업에서 정책 및 사업 수립 및 시행과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 (김주일 외, 2016; 박영균, 조흥식, 장승원, 2014; 조흥식, 염태산, 김병수, 2014; Paton & Gillian, 2006) 아동영향평가는 의사결정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용 가능한 정보 및 지식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효과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 (김주일 외, 2016; 박영균 외, 2014; 조흥식 외, 2014; ACT Children and 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Paton & Gillian, 2006) 아동의 주류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정책의 효과성 향상 (김주일 외, 2016; 박영균 외, 2014; 윤철경, 김윤나,	- 평가 영역은 갈등 사항(아동·청소년 관련 법규 및 조례와의 갈등 여부, 타 법규·조례와의 관계), 권리 보장(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보장,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 여부), 차별 요인(특정 유형의 아동에 대한 배제 및 차별 여부), 의견 수렴(당사자의 의견 수렴, 아동 대상 홍보 등 참여 증진 노력 여부)으로 구분(성북구청, 2018). - 평가 영역에 대해 대부분 정성 지표로 응답 -평가 절차의 경우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사전(사전심층), 사후(사후심층)평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초기 평가표 작성은 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체계로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1)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식을 확산시키며, (2) 정책의 수요자인 아동과 이해 당사자의 정책 결정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3)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개선함으로써 아동정책의 효과성 및 유효성을 향상 (성북구청, 2018)	- 정책과 사업은 아동 권리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 - 실질적인 아동 권리 증진에 기여 (성북구청, 2018)

국가별	아동영향평가 제도			
	목적 및 방향	수단 및 방법	효과성	기여 및 한계성
	2013) -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 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 위원회에 보고(보건복지부, 2019)	-심층평가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를 활용한 논의가 추가 - 성북구의 사례를 보면, 아동영향평가는 짧게는 1단계(사전평가), 길게는 4단계로(사전평가-사전심층평가-사후평가-사후심층평가)로 수행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과 함의.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9.12.)		
캐나다	- 지역별 유엔아동권리협약 준수를 위해 로드맵을 제안 (Whalen, 2012)	- 지역에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 - 조율할 책임이 있는 중앙기구를 먼저 신설 - 아동권리협약을 가이드 할 수 있는 계획도 설립 - 이후 지역 내 모든 입법 및 행정기관에서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예산 과정을 분석하고 아동 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서비스 - 매년 아동 권리와 행복도 보고 및 아동 권리에 대한 훈련과 교육, 연구지원.	유니세프 캐나다에 따르면 아동영향평가는 보편의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아동과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 (Whalen, 2012)	- 캐나다 뉴브런즈윅 사례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아동영향평가에는 아동청소년 단체 및 지방정부의 유관부처 공무원, 전문가들의 역량이 모두 필요함. (Whalen, Kotze, Pollack, 2014: 5), - 유니세프 캐나다도 아동영향평가가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과 후에 각각 시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영향평가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 (Whalen, 2012).
EU	- 아동 권리 영향평가는 제안 된 법률, 정책 또는 예산 할당의 영향을 예측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EU에 반영됨.	- 6개 EU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및 영국) 만이 법률 및 정책을 개발	- 아동 권리 영향평가 구분 - 인권 또는 사회적 영향평가 일부 국가 :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 아동 영향 평가는 모든 수준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정책 및 법률 개발 단계에서 정부에 구축되어야 함.

국가별	아동영향평가 제도			
	목적 및 방향	수단 및 방법	효과성	기여 및 한계성
	- 아동과 아동의 권리 향유에 영향 FR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 최종 접속일 2020.11.22)	- 아동에 대한 행정적 결정을 내릴 때 아동 권리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특정 조항 (스페인 같은 일부 회원국 은 이러한 요건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임.) FR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 최종 접속일 2020.11.22)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루마니아 a. 구체적 나열 국가 : 덴마크 와 에스토니아 b. 취약집단 아동위주만 나열한 국가 : 체코, 폴란드 - 아일랜드 와 같은 일부 회원국 에서 아동 옴부즈맨의 임무에는 새로운 법률 또는 정책이 개발 될 때마다 아동 권리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가능한 영향에주의를 끌기위한 요구 사항이 포함 체계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와 아동에게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및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옴부즈맨 사무실에 할당 된 재정 및 인적 자원에 따라 다릅니다.	- 아동 권리 영향 평가는 결정이 아동에게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가, 지역 및 지방 당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음. FR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 최종 접속일 2020.11.22)
호주	- 분석대상을 세분화함. - 연령, 인종과 종족, 장애여부 그리고 사는 환경에 따라 아동을 분류해서 정책이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임. (Children&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 제도 조사를 통한 활용 방법 :아동 성격, 연령에 따른 차이, 인종과 종족 , 장애 여부 - 아동이 사는 환경 여부 조사 방법: 한부모, 노숙자, 의료기관이 주변에 있는지 여부 - 온라인에서 매일 돈을 쓰는지, 온라인에 접속이 불가능한지 - 부모 병수발을 하고 있는지 여부 - 정규교육 수행	- 개방형/폐쇄형 질문의 혼합적 평가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동시 효과. - 아동 및 특정집단, 특별 취약 아동의 상호 영향 정보 효과 - 상의(consultation) 효과 : 대상 방식 고려 - 아동 관련 획득 정보처 - 대안 : 동일 목적 달성 위한 아동(취약 아동)에게 향상된 결과의 방법 도출	- 담당 아동·청소년 커미셔너의 영향평가 기준 제시에 기여하지만 세부적인 불가능 정보의 측정 및 의견 차이등은 한계성이 존재함. (a) 판단: 원천 데이터 증거에 기초 (b) 평가과정에서의 한계성 인정 (ex.가용불가능한 정보, 시간의 부족) (c) 의견 차이 및 불일치 (d) 법·정책

국가별	아동영향평가 제도			
	목적 및 방향	수단 및 방법	효과성	기여 및 한계성
		유무 - 아르바이트를 수행 유무 (Children&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 제안의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효과성 - 아동 집단 간 혹은 아동과 여타 집단 간 이해관계 경합 발생유무 - 아동 영향 측정 감시(모니터링) 효과 (Children&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Children&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이 정책 / 입법 제안이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를 개선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아동 협약)에 대한 뉴질랜드의 공약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명시 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개발을 지원 (Improving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New Zealand : Child Impact Assessment Guide , 뉴질랜드 정부 2018. 7)	- CIA(Child Impact Assessment) 도구를 통해 기관은 제안 된 법률 또는 정책이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 분석 및 평가 가능 - 영향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며, 단기, 중기, 장기 ;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로 영향 방법 분석 (Improving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New Zealand : Child Impact Assessment Guide , 뉴질랜드 정부 2018. 7)	- 전체 아동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 확인된 영향을 고혀하여 정책 제안 진행 - CIA를 통한 단일 기관 또는 기관 간 업무 프로그램의 정책 및 입법을 개발하는 공공 부문의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어 효과적임. (Improving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New Zealand : Child Impact Assessment Guide , 뉴질랜드 정부 2018. 7)	CIA 도구를 사용하면 정책 조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아동 중심의 실천을 지원하며 아동 협약에 대한 정부 정책 기여 - 2011 년 2 월 유엔 (UN) 아동 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으견 반영 기여 (Improving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New Zealand : Child Impact Assessment Guide , 뉴질랜드 정부 2018. 7)
스코틀랜드	-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법과 정책 및 실행상황의 적절성 및 유효성 여부 검토.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복지보다 아동권리 시각에 기반한 아동권리영향	- 아동·청소년 커미셔너 발의 법안 (스코틀랜드 정부나 영국정부, 기타 공공당국)이 제안한 정책 아동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활용 - 외부 문의에 기반을 둔	- 정부의 '모든 아동은 중요하다'에 대한 산출 체계 활용 - 안전, 건강, 성취, 양육, 활동, 존중, 책임, 소속등 각 항목에 효과 체계 SCCYP 모델 개발 1 식별 (평가할 내용 결정)	- 자신의 행동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개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의 권리 영향 평가를 개발 및 수행하고 권리 증진을 향상

국가별	아동영향평가 제도			
	목적 및 방향	수단 및 방법	효과성	기여 및 한계성
	평가 시행 (Paton and Munro, 2006: 16-18; 박영균 외, 2014: 80-83)	아동권리영향 평가를 수행 아동의 권리 영향 평가 : 계획결정, 예산 환경, 변경된 디자인 및 서비스, 포함된 정부 및 상담 수단, 입법 및 입번 진행 연습) (Paton and Munro,, 2006: 16-18; 박영균 외, 2014: 80-83)	2 단계 : 지도 (제안 된 내용, 결과 및 목표 설명) 3 단계 : 수집 (관련 정보 및 증거 수집) 4 단계 : 컨설팅 (어린이, 청소년 및 이해 관계자의 견해에 대해 문의) 5 단계 : 분석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안 평가) 6 단계 : 추천 (결론을 함께 도출하고 추천을 함) 7 단계 : 홍보 (영향 평가 결과를 알리기) 과 8 단계 : 모니터링 (제안의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 Children's Rights Impact Assessment: The SCCYP Model : 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Paton and Munro, 2006.10) (Paton and Munro, 2006: 16-18; 박영균 외, 2014: 80-83)	시키는데 기여를 행함. Children's Rights Impact Assessment: The SCCYP Model : 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Paton and Munro, 2006.10)
스웨덴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외교, 보건 부처가 아동영향평가를 시행(Sylwander, 2001). 아동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아동	- 아동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기록화 - 쉬운 공유 수단으로 평가과정 구체적 파악 가능. (Sylwander, 2001).	- 평가 요소 고려. - 정책 영향, 특정 문제, 이익 갈등 - 사회, 개인의 관점상 정책 비용과 이익 및 보상수단 필요과 연계한 효과 (Sylwander, 2001: 26).	아동 및 아동집단 정책결정 영향의 상이 다른 욕구 파악(성별, 연령,사회,경제, 문화,윤리 배경등) (박영균 외, 2014: 68-69) - 정책수립 단계에서

국가별	아동영향평가 제도			
	목적 및 방향	수단 및 방법	효과성	기여 및 한계성
	최선 의 이익을 구조화된 방식으로 실천하는 도구 또는 과정 아동영향평가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한다(Sylwander, 2001: 26).			특정 결정의 아동과의 영향 관련 논의 결과 분석이 쉽지 않음 - 아동에게 미치는 단기적 혹은 장기적 효과
핀란드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시, 아동발달과 복지, 사회관계와 환경안전, 자원할당에서의 아동 분배비율과 평등등 주요항목의 정책 방향 - 직간접적인 영향평가를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구성.(Taskinen, 2006: 15).	- 직접적 제도 수단 : 건강, 사회적관계, 삶과 이동성, 일상의 흐름, 참여, 평등 - 간접적인 제도 수단 : 고용,실업 증감, 공동체와 지역, 사회관계 - 아동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규칙 및 과정 개발 - 전문가 : 소속사회보장기관, 아동보호기관, 가족지원서비스기관, 보육과 건강 센터기관 관련자, 심리학자 등) (Taskinen, 2006: 15).	- 아동영향평가는 별도의 프로젝트가 아닌 정책이나 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부분으로 진행.	- 아동영향평가를 수행에 있어서 - 하는데 있어서, 특히나 사회적 관계나 편안함, 경험이나 일상을 보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질적 접근. -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는 질적 방법 및 양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이처럼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과 대상과 필요에 따라 혼용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개별 아동에 잘 맞는 표준화된 단일의 측정법을 찾기 어려움. (Taskinen, 2006: 9).
부탄	- C4CD (Care for Child Development) Plus가 아동의 학습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학습 향상, 부모/간병인 자내의 관행 개선 (Save the Children 2017. 11)	- 미국 Comic Relief Inc.프로젝트 자금 지원 및 보건부와 교육부 공동 협력 - ECCD (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 서비스에 원격 지역 사회의 3-5세 접근성 가능한 방법. (Save the Children 2017. 11)	- 부모가 C4CD plus에 참여한 아동은 읽기, 수리 등이 타 아동에 비해 학습 정보량 증가 간병인의 놀이활동 증가 빈부 격차 없는 동일한 학습 효과 (Save the Children 2017. 11)	- 파일럿 개이블 위한 구역 선택 운영은 센터 기반 프로그램 수의 상대적 제한 일부 마을 및 부족의 누락 - 전체 3-5세 아동의 19% 누락 발견 (Save the Children 2017. 11)

자료: 각 국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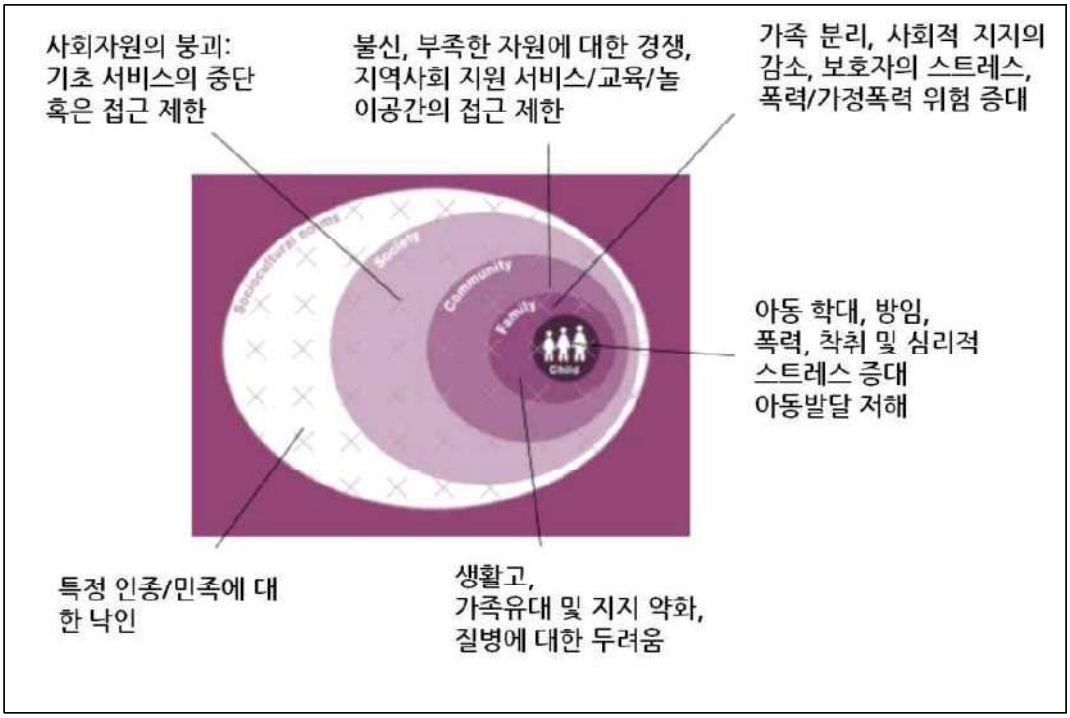
제3절 사회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COVID-19

1. COVID-19로 인한 아동 삶의 변화와 영향

○ 현대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여러 위기 상황 속에 아동의 권리는 더욱 위협 받고 있음. COVID-19는 전 세계 아동과 가족의 삶을 바꿔 놓고 있으며, 특히 학교 폐쇄와 이동 제한은 아동의 일상과 돌봄 등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방안이 요구됨

○ COVID-19는 사회생태학적으로 사회자원의 붕괴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교육, 놀이공간 등의 접근의 제한, 가족의 분리와 사회적 지지의 감소, 보호자의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폭력과 가정폭력의 위험 증대,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낙인, 생활도, 가족 유대·지지 약화, 질병에 두려움 등의 다양한 영향을 미침. 또한 COVID-19 와 같은 전염병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환경을 저해할 수 있음. 가족, 교우관계, 일상생활 및 넓은 범위에서의 지역사회 혼란 등은 아동의 복지, 발달 및 보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 더불어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대처 방법들이 아동들을 아동 보호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음. 가정, 시설 또는 지역을 거점으로 분리 및 격리하는 방법들은 아동과 아동의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COVID-19는 아동들의 생활 환경을 급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 학교 폐쇄와 이동 제한 같은 격리조치는 아동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적인 지원을 저해하는 반면, 부모 및 아동 보호자들에게는 새로운 보육 방법을 찾거나 (양육 때문에)출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함. COVID-19 와 관련된 낙인과 차별은 아동들을 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심리사회적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만들 수 있음. 젠더에 기반 한 욕구 및 여성과 여아의 취약성을 반영하지 않은 질병 관리 조치는 보호 위험을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음. 사회경제적인 배재로 이미 취약해져 있거나, 포화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9]

9) United Nations (2020).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United Nations.



[그림 4-1] COVID-19의 사회생태적 영향

UN(2020)[10]은 'COVID-19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를 통해, COVID-19 대응의 전례 없는 조치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발표함. COVID-19는 아동권리를 위협하는 보건 위기로 COVID-19가 어린이의 빈곤, 생존과 건강, 교육,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며, 모든 국가의 전 연령에서 전체 어린이가 COVID-19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중 몇몇 어린이들의 삶은 되돌리기 힘든 상황임 발표함. COVID-19 영향으로 인한 아동 영향 관련 UN 정책 권고 사항(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2020)은 아동에 대한 빈곤, 학습, 위협, 안전과 이에 대해서 사회 보호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표 4-15> COVID-19 아동 영향 관련 UN 정책 권고 사항(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2020).

COVID-19와 아동의 영향 정도, UN 정책 권고 사항		
COVID-19 영향	아동의 빈곤 심화	2019년 3.86억명에서 추가 4,200~6,600만 아동 극심 빈곤 증가

10) United Nations (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United Nations.

COVID-19와 아동의 영향 정도, UN 정책 권고 사항		
	학습 위기악화	국가 원격 학습 플랫폼 도입 : 2/3 국가 원격 학습, 저소득 국가는 30% 수준
	아동 생존 및 건강에 대한 위협	아동 사망률 증가 및 학교 급식 중지로 영양 실조 심화, 정신건강 위협
	어린이 안전에 대한 위험	대피소 환경에서의 안전, 학대 위험 증가 및 온라인 플랫폼 상의 주적절한 콘텐츠 및 온라인 범죄 노출 위험 증가
COVID-19 환경속의 정부 정책 권고	저소득 국가 및 지역 사회의 아동에 대한 표준 물리적 거리두기 및 폐쇄 전략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입 조합을 재조정하고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의 필요성	
	학교 교육, 영양 프로그램, 예방 접종 및 기타 산모 및 신생아 보호, 지역 사회 기반 아동 보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접근성의 형평성에 특히 초점을 두고 아동 중심 서비스의 연속성을 우선	
	자녀와 함께 유행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 자신의 정신 건강과 자녀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를 포함하여 부모와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권고	

○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COVID-19로 초등생 두 형제가 비대면 수업 동안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 화재가 발생 해, 아동 한 명이 사망하고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 COVID-19로 인한 돌봄 공백 및 아동 방임 등의 아동 보호와 학대 등 심각한 우려를 표함(오주환, 2020)[11]

○ COVID-19의 발병 상황에서 확인되고 있는 아동보호 위험들과 과거 전염성 질병 유행 시 목격되었던 잠재적인 위험들로 다음의 아동보호 위험을 보고함(UN, 2020)[12]

- 신체적/정서적 학대 : 보호자의 돌봄(Supervision) 감소 및 아동방임, 아동학대 및 가정/대인관계 폭력 증가; 중독 및 기타 아동 부상의 위험, 아동 보호 서비스의 과부하 또는 접근성 부족
- 젠더기반폭력(GBV) : 지원을 대가로 한 아동대상의 성관계 요구, 상업적 성 매매 및 강제 조혼 등의 성 착취 위험 증가; 아동보호/젠더기반폭력 대응 서비스의 과부화 또는 접근성 부족
-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 죽음, 질병, 가족과의 분리 또는 질병

11) 오주환 (2020). 어머니 방임·돌봄 공백 사각지대… 초등생 '라면 형제' 비극 불렀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6764 에서 2020.9.18. 발췌.

12) United Nations (2020).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United Nations.

의 두려움으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 기저 정신 건강 증상의 악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과부하 또는 접근성 부족

- 아동 노동 : 아동이 위험하거나 착취성의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 증대
-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 : 분리, 보호자와 헤어지거나 소년소녀가장이 되는 경우, 시설에 맡겨지는 경우
- 사회적 배제 : 감염된 개인 또는 감염을 의심받는 개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 거리 아동 또는 이미 위험을 가진 아동에 대한 위험 증가 또는 지원 감소, 재판 중에 있거나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증가된 위험 또는 지원 제한
- 이에 따른 아동보호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정부와 연계한 옹호활동, 다른 섹터와의 협력활동, 아동보호특화 활동으로 구분 됨

○ 정부와의 다자간 협력은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의 아동보호최소 기준(CPMS)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감염성 질환 발생 예방 및 대응은 다자간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이 요구됨

〈표 4-16〉 정부와의 다자간 협력

정부와의 다자간 협력	
다분야(multisectoral) 대응	a) 아동 및 보호자의 욕구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b) 아동을 위해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도록 이끔. 아동보호 활동가는 종교적, 전통적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함
다분야(multisectoral) 개입의 우선 순위	•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아동 사례를 문서화하고 의뢰 연계 하기 위한 표준 절차 수립 • 가족 분리 및 기타 형태의 아동 보호 위험을 예방/감소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protocol) 수립 •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 및 배제 감소 • 질병 유행과 관련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아동 특유의 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아동 친화적인 메시지 개발.

○ 아동보호 활동가는 정부와의 협력 시 COVID-19 관련 제반 조치가 국제 표준 및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사항을 따르며, 인권을 기반으로 비차별적

이고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옹호활동을 펼쳐야 함. 정부 및 다분야 협력 시 아동보호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활동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표 4-17〉 COVID-19 관련 아동 옹호 활동 주요내용

정부 및 다자간 협력 시, 아동보호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활동	
1. 보건 (CPMS 기준 24)	• 취약 아동 및 그 가족이 의료 서비스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옹호한다.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 • 보건 섹터 조사 및 모니터링/평가 시 아동보호 이슈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분리 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가족 기반의 보건 및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동 사례를 문서화하고 의뢰하는 공통의 표준 절차를 개발한다. • 가족 분리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아동 친화적인 사례사정 및 종결 절차의 수립에 대한 옹호활동을 펼친다. • 일시적으로 분리된 아동과 부모/보호자 사이의 안전하고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다. • 아동이 치료 중이거나 격리되어 있을 시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조치 및 아동 친화적 소통방법 관련 지침 등 아동 친화적인 보건시설/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협업한다. • 보건 종사자를 위한 아동 세이프가딩 교육을 지원한다(특히, 아동이 가족 및 보호자와 분리된 경우). • 의료 시설에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인 불만 사항 및 고충처리 절차를 도입한다. • 성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요 시설에서의 강간 관련 임상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최소 임상 관리 물품들이 구비되도록 한다. • COVID-19 의 피해를 입은 아동 및 보호자들을 위해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을 실시하며 관련 메시지 전달을 위해 협력한다. • 비상 계획에 COVID-19 발생 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도록 한다. • 서비스 알림 및 배표용 교육자료들은(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materials)문자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등 아동친화적으로 제작되고 배포되도록 한다.
2.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증진 (CPMS 기준 26)	• 보건시설, 학교, 아동보호시설, 대안돌봄시설, 아동이 방문 가능한 시설 내에는 손 씻기가 가능한 아동친화적인 세면 시설이 확보되도록 한다. • 전염병 발병 전 또는 진행 중에 아동, 부모/보호자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인 개인 위생 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실시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포스터 및 시각자료 개발이 포함될 수 있다. • 급수 및 위생 시설내 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3. 영양 (CPMS 기준 25)	• 시설 또는 자가 격리 중인 아동과 가족들이 적절한 수준의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영양 지원 시설 내 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4. 교육 (CPMS	• TV, 라디오 및 온라인 학습 등 아동친화적 원격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학업

정부 및 다자간 협력 시, 아동보호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활동	
기준 23; INEE List of Resources)	중단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 • 돌봄 관련 제약이 있는 부모 및 보호자들이 자녀 양육 및 교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연 근무제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 한다. • 학교와 협력하여 공황 및 스트레스 감소, 불안감 해소 및 보건 관련 안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부모 및 아동 대상 보호/안전 관련 메시지들을 전달한다. • 교사 및 기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아동보호 필요가 있는 아동을 식별하고 의뢰연계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징후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 교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젠더기반폭력(GVB) 위험경감,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PSEA), 아동 세이프가딩 및 안전한 의뢰체계에 대한 필수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 내 아동친화적인 불만사항 및 고충 처리 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교 내 아동보호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즉 사례관리, 가족 추적 및 재결합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개발, 배포 및 전시한다. • 교육 기관/담당자들과 협력하여 학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아동보호 중점 **프로그램**

- COVID-19 대유행에 따라 '인도적 상황에서의 아동보호 최소 **기준**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과 '전염병 발생 상황에서의 아동 보호 **가이드라인**(Guidance Note: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내 기존 조치들을 보완 할 수 있는 활동들과 위험경감 외에 **지역사회, 가족**, 보호자 및 아동들의 강점과 긍정적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UNICEF(2020)[13]는 COVID-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낙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 기구는 인도주의적 아동 보호 연맹의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에 관련된 당국과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을 **발표함**

○ 또한 모든 COVID-19 예방 및 통제 조치에 어린이 보호가 필수적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함**(UNICEF, 2020)

13) UNICEF (2020).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Technical Note.

〈표 4-18〉 아동 보호를 위한 COVID-19 예방 및 통제 조치[14)]

아동 보호를 위한 COVID-19 예방 및 통제 조치
•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 및 문제를 안전하게 보고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COVID-19 관련 아동 보호 위험에 대해 보건, 교육 및 아동 서비스 직원을 교육합니다.
• 성폭력 공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최초 대응 자들을 교육하고 의료 서비스와 협력하여 젠더기반폭력(GBV: Gender-Based violence) 생존자를 지원합니다.
• 추천 및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를 늘리십시오.
• 어린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COVID-19가 프로그램과 옹호를 알리기 위해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합니다.
• 아동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적절한 자기 관리에 참여하기 위해 아동 가장 가정 및 위탁 가정을 포함하여 임시 보호 센터 및 가족에 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소득 창출 기회가 영향을 받은 가족에게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아동-가족 별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입원 또는 사망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 없이 홀로 남겨진 아동에 대한 지원을 보장합니다.
• 질병 통제 조치에서 모든 어린이의 보호를 최대한 고려하십시오.

○ 한편, 세이브더칠드런(2020)[15)]에 따르면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됨에 있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총 46개 국가에서 아동의 건강, 교육, 보호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 감염 지수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영향 정도에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이를 한국의 COVID-19 확산 이후, 만11세~16세 아동을 둔 성인 보호자 및 해당 아동을 200명을 대상으로, 변화한 아동의 보건, 학습권, 웰빙, 보호 관련 실태를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 등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동이 의견을 말할 권리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COVID-19 관련 의사소통에 대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 간의 인식 차이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 또는 보호자의 67%는 아동과 '자주' 이야기 한다고 응답했으나, 아동의 관점에서 어른들이 의견을 먼저 물어보거나, 함께 의사 결정을 내

14) UNICEF (2020). COVID-19: Children at heightened risk of abuse, neglect, exploitation and violence amidst intensifying containment measures(https://www.unicef.org/ 20, March, 2020).

15) 세이브더칠드런 (2020). 코비드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글로벌 서베이 한국 결과 보고서.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리는 등 의견 존중 및 반영하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정 내 어른들이 자신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응답 비율이 만11세~13세 45%, 만 14세~16세 51%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의 의견은 덜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됨

○ 다자녀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의견을 경청 및 존중, 반영하는 분위기가 일반 가정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걱정 또는 고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88%가 타인에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응답함

○ COVID-19가 보건, 영양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COVID-19 확산으로 비활동적 생활습관이 지속되면서, 장기화 시 아동의 신체활동량 저하가 우려되고, 일반 가정은 위생과 의료품 및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장애 요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으나, 지역 및 가정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농어촌 및 다자녀 가정은 위생 및 보건 용품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도시 거주자는 COVID-19 이후 가족 중 질병이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느낀 비율 역시 소폭 높았음. 한편, 일반 아동에 비해 만성질병 보유 아동이 COVID-19 확산 기간 동안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약화가 우려됨. 외부환경에 민감한 만성질병 보유 아동은 비활동성, 수면·식욕 등 신체적 변화 뿐 만 아니라 감정 조절 및 스트레스 징후 등의 감정적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평소 만성질병을 보유한 아동은 '의료 용품 수급', ' 대면 의료 서비스' 및 '물리 치료' 등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남

○ 교육권에서는 학교가 개학해서 직접 등교를 하거나, 원격 수업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다닐 때와 비교하여 아동의 공부 양은 '조금' 정도라는 응답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74%가, 아동은 62%로 높게 나타남. 부모 또는 보호자 및 아동 모두 재택 학습 시, 교육 도움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 하였으

며,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 시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학습 자료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과정(64%)', '교과서(47%)', '문제집(39%)', '인터넷(34%)' 등으로 온라인 학습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아동의 빈곤과 사회적 보호에서는 COVID-19 이후, 52%가 가계 수입이 감소했으며, 그 중 31%는 COVID-19 전 대비 가계 수입이 약 절반 이하 수준으로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남. 가계수입 감소로 비용 지불이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음식(25%)', '건강관리(22%)', '필수 영양제(19%)' 등 영양 및 보건과 관련 된 항목이 상위에 응답됨에 따라 COVID-19 전후 아동의 제한 된 식생활 및 영양 부족이 우려됨. COVID-19 확산 기간 동안 전체 11%가 '비싼 식료품 가격' 때문에 가정 내 식량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도시 거주 및 가정 내 아동이 다수인 경우 식료품 가격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폭력으로부터 보호에서는 COVID-19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는 '걱정(79%)', '불안(75%)'을 이전 보다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아동 역시 '걱정(72%)', '불안(40%)'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남

○ COVID-19 이후 가정 분위기에 대해 부모 또는 보호자의 43%는 '즐겁게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가정 내 스트레스와 불화가 심화'되었다는 응답 역시 22%로 나타남.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에 대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대화·행동하는 상황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가정의 상황에 대해 아동은 '편안함(65%)', '행복(36%)'의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들이 아플 까봐 두려움(28%)', '긴장(16%)'의 부정적 감정 역시 공존 하는 것으로 보여 극소수이지만 가정 내 폭력이 일어난다는 응답도 있었음

○ 또한 열악한 농촌지역 다자녀 가정의 결과에서 농촌 지역의 식품, 의료서비스,

의료용품을 구하기 우한 외출에 방해요소로 '이용불가와 공급부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COVID-19 확산 이후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COVID-19 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경제적 지원' 및 '육아 도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COVID-19 상황 관련 어른들과 의사소통 행태는 전체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농촌 다자녀 가구는 아동들의 의견을 묻거나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적극적인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COVID-19 상황 이후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가 필요한 것에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은 긍정적이나,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육아에 대한 자신감 하락은 전체 응답자 대비 더 높게 나타남. 부모 또는 보호자의 관점에서 아동들은 COVID-19 이후 감정 조절 및 다른 스트레스 징후가 발생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걱정, 불안, 슬픔, 공포 등의 감정을 더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 다자녀 가정의 경우, 실내 주거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며 외부 공간에 늘 공간이 더 많은 화경임. 평소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 전체 응답자 대비 다양하지 않고, COVID-19 이후 실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놀기 활동이 감소함. COVID-19 생활 패턴의 변화가 전체 응답자 대비 크지 않은 편이며,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농어촌 다자녀 가정의 교육환경 및 학습 양 수준은 전체 응답자 대비 다소 긍정적인 편이나, 이는 지역 간 학습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짐

2. 4차 산업혁명과 정보·교육환경의 격차

○ 아동과 연계한 인공지능 기술 권장 방향으로 UNICEF(2020)[16]는 아동에게 인공 지능 (AI) 시스템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분야에서 AI 기술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으로 챗봇 및 적응형 학습 소프트웨어 구동 시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한 동영상, 뉴스, 음악, 채팅등 인공지능 (AI) 사이에서 아동의 삶과 웰빙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복지 보조금,

16) UNICEF (2020). Policy guidance on AI for children(2020.09).

의료 서비스의 질 및 교육 접근성, 가족의 주택 신청 등의 이러한 영향은 모든 어린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니세프는 AI 시스템이 모든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영향으로 인해 AI 기술, 정부 및 많은 조직이 지침을 설정하였고, 유니세프는 아동의 권리 유지 보호 제공 및 참여 관찰을 통해 어린이의 발달과 웰빙을 지원하고 있음

〈표 4-19〉 일반적인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의 예

구분	챗봇 Chatbots	추천 시스템 (Recommendation systems)	로봇 (Robots)	자동화 의사 결정 (Automated decision-making)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	○	○
컴퓨터 시각 인식 (computer vision)	×	×	○	×
규칙 기반 모델 (Rule-based modes)	○	○	○	○
학습 기반 예제 Learning from examples	○	○	○	○
계획 기술 (Planning techniques)	○	×	○	×
분석 예제 (Predictive analytics)	○	○	×	○
성과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	○	○	×

자료 : UNICEF (2020). Policy guidance on AI for children.

○ 위의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은 아동을 위한 것이 대부분 아니며, 아동이 사용 가능하지 않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직간접적 아동에게 영향이 있음으로 유니세프(2020)는 "어

린이를 위한 AI 정책 지침(Policy guidance on AI for children)"을 통해 인공지능 권장시스템과 주요 기회를 다음과 같이 권장함

〈표 4-20〉 아동을 위한 인공지능 권장시스템과 주요 기회

인공지능 활용 아동 연계 권장 시스템 지침 사항	인공지능 활용 주요 기회
아동과 인공지능 시스템이 상호 작용하는가?	아동의 교육을 돕고 개발 : AI지원 학습도구 및 대화형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동용으로 설계되었는가?	건강에 더 나은 기여와 아동을 위한 결과 : 질병 진단 및 COVID-19 등 감지 방법 감성적인 AI 친화형 아동 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 발전 가능한 개발의 성취 지원

○ 한국의 ICT 정책과 아동교육의 방향

-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시대환경의 변화와 COVID-19 여파로 인하여 아동 관련 정책 사항도 계층 간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격차의 우려 및 요구로 인하여 미래 교육에 4차 산업혁명의 ICT 기술 활용에 관련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됨
- 교육부(2020)는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발표

〈표 4-21〉 아동을 위한 인공지능 권장시스템과 주요 기회

분야	추진 목표	10대 정책과제(안)
유초중등교육	국가의 책무성, 현장의 자율성 강화	①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②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③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④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고등평생교육	공유와 협력을	⑤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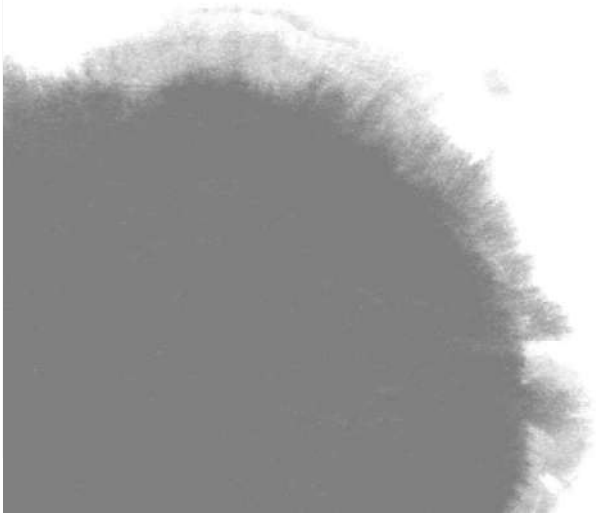
분야	추진 목표	10대 정책과제(안)
	통한 혁신 지원	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⑦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⑧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기반 구축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⑨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⑩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자료 : 교육부 (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교육부: 2020년 10월 5일).

- 4차 산업혁명의 중심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가 핵심기술이며 COVID-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비대면 수업과 교수매체 활용 등의 교육환경과 연계됨
- 특히, 아동의 발달과정 및 심리 상태, 각종 운동량을 인지하고 이를 빅데이터를 통한 처리. 분석화를 통해 아동에게 편의성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가 활용 중이며,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한 전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의 서비스 및 플랫폼 사업자, SNS는 다양한 정보를 선보이고 있음
-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각종 콘텐츠(Contents) 또한, COVID-19 환경에 대면적 교육을 대처하는 비대면 교육으로 서비스 중이며 특히,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각종 동영상 콘텐츠와 교육 플랫폼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위하여 1:1 맞춤형 수험 및 다계층 간의 혼합 교육 등도 활발해지고 있음
- 즉,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흐름은 아동 및 학부모, 일선 교육현장에서 최첨단 기술의 서비스로 연동되어 점진적으로 혁신 교육과정의 미래 교육을 앞당길 전망으로, 이러한 흐름에서 과학기술과 아동의 영향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에서 아동영향평가 도입이 긴요함

05

아동영향평가 제도 분석



제5장 아동영향평가 제도 분석

제1절 법적 근거 및 평가제도 분석

1.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정책영향평가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의거, 19년도 3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함.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범운영 평가에 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는 42개의 지자체가 있음. 이는 대부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아동영향평가가 이루어짐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개정일: '16.3.22, 시행일: '19.3.23)

<표 5-1>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본조신설 2016. 3. 22.]

<표 5-2>「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3(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의 기본원칙·대상·방법 및 절차 등 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에 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원에 지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9. 7. 16.>]

2. 평가제도 분석

1)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주요 내용[17)]

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17) 보건복지부 (2019.01.22.).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7491 에서 2020년 8월 1일 인출.

○ 평가 대상은 아동의 권리(건강, 안전,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임.

-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 가능

* UN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권고

○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해당 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구분

- 아동 관련 정책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정책 및 관련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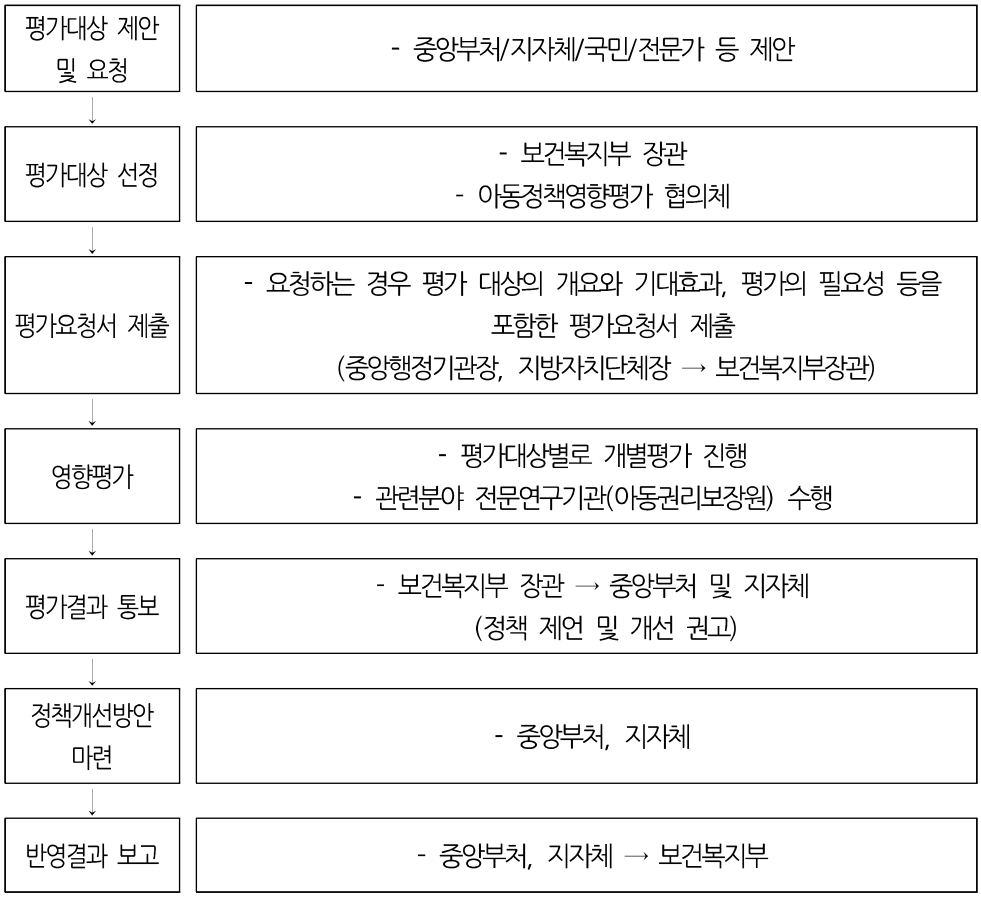
- 기타 정책은 정책담당 부처에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

②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하여 전문평가기관(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다.

○ 자체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은 부처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신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개정: '19.1.15, 시행: '19.7.16)



[그림 5-1]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도

제2절 아동영향평가의 정책적 함의

○ 현재까지 아동영향평가 조례는 시군구 단위에서 **제정되었으며**, 아직까지 **광역** 시도 차원에서는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협조와 협력 등의 거버넌스가 이어지고 **있음**

- 광역시도 차원에서 아동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되고**, 아동정책에 대한 **사전·후** 영향평가 등이 **진행된다면**, 아동정책기본계획과의 정책적 **연계성**, **효과성**, 일관성 등의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아동영향평가의 **개념**, 목적 및 **기능**, **기본방향**, 대상 및 **범위**, 과정으로의 평가 대상 선정부터 이행점검까지 모든 절차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시킬** **관점과**, 아동영향평가의 내용구성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함

○ 아동영향평가의 방법에는 정량과 정성평가 함께 이루어지는 혼합평가를 **권장**

하며, 이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의 정량평가; 평가지표를 활용한 아동의견 수렴, 전문가 평가단의 정성평가·분석, 아동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 초안) 작성 및 사업부서 의견조회 후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아동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안) 협의 결정,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결정, 아동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안)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최종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아동영향평가의 주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음

<표 5-3> 아동영향평가의 주요 방법과 절차

평가방법	평가 절차
혼합평가 (정량평가 + 정성평가)	① 사업수행기관의 정량평가 ② 평가지표를 활용한 아동의견 수렴 ③ 전문가 평가단의 정성평가·분석, 아동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 초안) 작성 및 사업부서 의견조회 후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 ④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아동 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안) 협의 결정 ⑤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결정 아동 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최종 결정

○ 조례 제정 시,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의 정책적 실효성 강화 방안, 행정의 단·중장기적 고려사항, 타 법규(조례) 및 영향평가의 연계 및 개선안 등의 고려도 요구됨.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이므로, 아동의 주요 이슈 등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평가 대상 및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하되,

- 아동의 주변 환경, 학교 주변 시설·도로, 대기·미세먼지 등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있는 아동영향평가 결과 및 권고안 연계시키고, 다양한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긴요함. 향후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타 영향평가와의 관계 및 연계성을 고려한 평가지표과 절차를 위한 심도있고, 전문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
- 아동의 권리 보장, 아동복지 증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사업 구체화 및 이를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요구됨